교원 국외여행에 관한 규정

2009. 06. 30. 최초제정 2012. 08. 01. 부분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 교원의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분) 교원의 국외여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- 1. 출장: 대학의 업무수행, 학술연구, 학술교류, 국외연수 등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.
- 2. 국비파견: 국비 및 이에 준하는 공적예산으로 연구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.
- 3. 유학: 전공분야의 학문연구를 위해 또는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6개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.
- 4. 기타여행: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.

제3조(여행자 선정기준) 국외여행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.

- 1. 국외여행 횟수
- 2. 교수업적 및 근무실적
- 3. 본 대학 재직기간
- 제4조(허가조건) ①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은 우리 대학에 6년 이상 재직한 자에 한하여 허용하며,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을 한 교원은 6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을 할 수 없다.
- ②유학은 소속 학과별 교수의 휴직, 파견 등을 고려하여 허가한다.
- ③기타여행은 학기 중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.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허가할 수 있다.
- **제5조(여행기간)** ①출장 국외여행은 강의 및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기 당 통산 15일 이내로 한다. 다만 총장의 명에 의한 공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②국비파견 여행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한다.
- ③유학은 2년 이내에 한하여 허가한다.
- ④방학기간중의 국외여행은 학기당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할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6조(연장의 제한) ①국비파견은 원칙적으로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

②유학은 학위취득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연장을 허가한다. 그러나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7조(허가의 제한) ①유학은 1학과에 1인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동일학과에서 동일한 시기에 다수 교원이 여행함으로써 학사업무 또는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총장은 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8조(허가절차) 국외여행을 희망하는 교원은 여행개시 20일 전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

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. 단,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여행의 경우에는 여행개시 40일 전에 허가 신청해야 한다.

- 1. 국외여행허가원[별지 제1호 서식]
- 2. 연구계획서(연구를 위하여 국외여행을 하여야 할 경우)
- 3. 휴직원(제11조에 의하여 휴직을 명하여야 할 경우)
- 4. 보강계획서(학기 중 국외여행의 경우에 한한다.)
- 5. 본 규정의 의무사항을 준수한다는 각서

제9조(연장허가) 제7조제2항에 의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여행기간 만료 2개월 이전에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한다.

제10조(여행 중의 신분) ①유학 및 수업기간 중 30일 이상을 결근하는 기타 여행은 허가와 동시에 휴직을 명한다.

②파견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휴직 처리한다.

제11조(여행 중의 보수) ①출장과 휴직을 명하지 않는 기타 여행기간 중에는 여행 전의 통상의 보수를 지급한다.

- ②국비파견기간 중에는 통상의 보수(학생지도비 제외)를 지급한다.
- ③유학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.
- ④휴직을 명하는 기타 여행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.

제12조(복무의무) ①6개월 이상 국외여행을 한 교원은 여행기간의 3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우리 대학에 근무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위반하여 사직할 경우는 여행기간 중, 본 대학에서 지급한 보수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

제13조(준수의무) 국외여행 교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1. 국외여행 교원은 지정된 파견지와 연구 분야에서 연구하여야 하며, 연구가 끝나는 대로 즉시 귀국하여 복교하여야 한다.
- 2. 국제학술대회발표, 공무수행 등으로 국외여행을 마친 교원은 귀국 후 7일 이내에 출장 보고서[별지 제2호 서식]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3. 국외여행 파견교원은 6개월 이내에 여행목적 수행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,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국외여행 결과보고서[별지 제3호 서식]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유학의 경우에는 학적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
- 4. 여행기간이 종료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강의담당 교원의 현저한 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장은 그 교원의 복귀를 명할 수 있다.

제14조(복귀 불응자에 대한 조치) 제13조에 따라 복귀하지 않은 교원에 대하여는 일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국 외 여 행 허 가 원

계 열		\$	학 과			
직 명		ż	성 명			
	구 분	연 구() 학술발표(파 견() 방 문(공무수행() 유 학() 관 광()		
	목 적					
	국명	7	지 명			
여 행 내 용	경 유 지 (국 명)		경 유 지 (지 명)			
	기 간	~		. (일간)		
	경비부 담		가족동반 여 부			
첨 부: 1. 관련서류(초청장, 일정표 등) 1부 2. 보강계획서(수업이 있는 경우) 1 부 3. 사유서(학기 중 여행 시) 1부						
위와 같이 국외여행 허가원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
년 월 일						
	신 청 인 : ①					

학 과 장	

결	담 당	과 장	처 장	총 장
재				

[별지 제2호 서식]

출 장 보 고 서

출 장 인	계 열		학 과			
	직 명		성 명			
출장구분	국내출장 ()	국외출장 ()			
출장목적						
출장기간	년 월	일 ~	년 월	일 ()일간	
출 장 지						
출 장						
결 과						
내 용						
(구체적으로)						
	(※교육출장의 경우 교육	명, 교육목적, 교	육내용, 교육	효과 등을 털	별지에 작성)	
	학 과	직 급	성	명	비고	
동 행 자						
철 부 : 출장 관련자료(확인서, 여권사본 등) 1부						
위와 같이 출장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.						
기가 Έ의 출장에 써는 실각모고시를 세련됩니다.						
년 월 일						
출 장 인 : ⑩						

결	담 당	과 장	처 장	총 장
결 재 재				
'				

[별지 제3호 서식]

국외여행 결과보고서

학 과			직 급		성	명		
연구과제명								
연구기간	년	월	일 ~	년	월	일(개월)	
	학술지명 (출판지)							
연구실적물	결과구분	결과구분 학술지게재(), 학술발표(), 학술저서() 대학교재(), 작품전시(), 기타()						
	발간년월일				호 · 면 (페이지수)		
연구결과 요 약								
첨 부	연구실적물 1부							
위와 같이 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.								
년 월 일								
	제 출 인 : 인							
대전보건대학교 총장 귀하								